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9. 19(월)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47,709,131천원(일반 732,481,898천원 특별 15,227,23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747,709	693,262	622,602	58,654	12,006	54,447
일반회계		732,482	678,786	608,146	58,634	12,006	53,696
특별회계		15,227	14,476	14,456	20	0	751
	의료급여기금	803	636	636		-	16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1	291	-	-	351
	주차장	13,782	13,549	13,529	20	-	233

4.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교통건설국		43,095,587	40,908,503	2,187,084	5.35 %
교	통 행정과	1,360,256	1,337,585	22,671	1.69 %
주	차 관리과	18,781,806	18,548,568	233,238	1.26 %
건	설 행정과	4,241,123	4,240,903	220	0.01 %
도	로 과	11,974,009	10,564,188	1,409,821	13.35 %
치	수 과	6,738,393	6,217,259	521,134	8.38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보행안내표지판 전기요금 인상 반영 	269,828	227,094	42,734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도로보수 연간단가 및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 	4,072,940	3,122,940	950,000
신속한 제설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이동식살포장치 임대, 제설 대책용역비 증액 	2,180,467	2,020,467	160,000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가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가로등 유지 관리	◦ 주요내용 - LED 가로등 구매	637,637	624,137	13,500
	보안등 유지 관리	◦ 주요내용 - GPS 점멸기 교체	516,967	468,967	48,000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944,936	744,936	200,000
	빗물펌프장시설물 유지 관리	◦ 주요내용 -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펌프장 전기요금 증액	632,115	514,257	117,858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 주요내용 - 안양천 시설물 연간단가 증액 및 시흥천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	714,238	524,238	190,000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최종예산	가정액	2차 추경(안)
				13,781,806	13,548,568	233,238
1	주 차 관 리 과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구매	195,980	196,980	△ 1,000
2	주 차 관 리 과	기본경비	◦ 주요내용 - 급량비 및 출장여비	135,867	165,108	△ 29,241
3	주 차 관 리 과	반환금 기타	◦ 주요내용 - 시비보조금 반환금	264,337	858	263,479

5.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지정액(409억 850만원)에서 21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430억 9,5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76%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 교통행정과

지정액(13억 3,750만원)에서 금회 2,260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270만원 증액

나. 도로과

지정액(105억 6,400만원)에서 금회 14억 98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보수 연간단가 및 용역 9억 5,000만원 증액

제설대책 1억 6,000만원 증액

가로등 및 보안등 6,150만원 증액 편성

다. 치수과

지정액(62억 1,700만원)에서 금회 5억 2,1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2억원 증액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억 1,780만원 증액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

기정액 135억 4,85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137억 8,180만원이 편성됨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급량비 등 기본경비 2,920만원 감액

보조금 반환금 2억 6,340만원 증액 편성

○ 교통건설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및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